

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안내

(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(2007. 7. 1부터 시행))

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는 각 응시분야별 3명 이상일 경우, 각 전형별 만점의 10% 또는 5%를 가산함. 단, 선발예정인원이 응시분야별 3명 이하인 경우라도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함.

※ 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

대 상 별	10% 가점	5% 가점
독립 유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애국지사 본인 · 순국선열 유족 ·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애국지사 가족 ·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·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
국 가 유 공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가유공자 본인 ·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 사망자, 순직공무원, 특별공로 순직자의 유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가유공자의 가족 ·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·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대 중 1인 · 전몰·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
5·18민주 유 공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· 기타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·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·18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·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· 사망한 5·18민주유공자의 제대 중 1인
특수임무 수 행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특수임무부상자·특수임무공로자 본인 ·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특수임무부상자·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· 특수임무부상자·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·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대 중 1인
고 업 제 후유의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